

하나 현금 IC 카드 이용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 ① 「하나 현금 IC 카드」(이하 “현금 IC 카드”라 함)란 IC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 입출금기, 무인공과금 수납기(이하 “자동화기기”라 함)를 이용하여 예금거래를 하거나 현금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제공하는 카드를 말하며, 현금 IC 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통장 특약, 입출금이 자유로운 약관 및 CD 공동이용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IC 칩: 카드에 장착될 수 있는 집적회로(IC)를 말한다.
- ② 카드출금 비밀번호: 현금 IC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서 인출 등의 거래시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4 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한다.
- ③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현금 IC 카드 발급시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6 자리의 구성된 비밀번호를 말한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은행이 정한 “현금 IC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승인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현금 IC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4 조 현금 IC 카드의 계좌 등록

- ① 현금 IC 카드에는 2 계좌 이상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 1 매당 최대 10 계좌까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계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5 조 카드출금 비밀번호 및 PIN 의 신고

현금 IC 카드의 카드출금시 이용할, 카드출금 비밀번호와 PIN 은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현금 IC카드에 의한 거래

- ① 현금 IC 카드는 통장이나 청구서 또는 수표의 제출 없이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 의하여 현금인출(자금이체포함) 및 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 ② 서비스 이용시 은행은 PIN 번호, 계좌번호, 카드출금 비밀번호가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현금 IC 카드에 계좌가 1 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PIN 번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자동화기기의 장애로 인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혼잡 등 창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 카드를 제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④ 예금주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에서 카드이용 후 이용대금이 예금주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예금주가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예금주의 결제계좌로부터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한다.
- ⑥ 가맹점에서 거래취소시 부득이한 여건에 의하여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주는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7 조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 확인

- ① 현금 IC 카드의 이용시 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기기에 제공되는 거래 명세에 의하여 이용 금액 등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예금주가 가맹점에서 결제거래시 은행은 이용명세를 예금주의 통장(결제계좌)에 기장해 줌으로서 이용명세 통지에 같음할 수 있다.

제 8 조 변경, 사고 등의 신고

- ① 이용자는 현금 IC 카드에 계좌를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현금 IC 카드의 분실, 훼손, 도난, PIN 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에는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현금 IC카드의 재발급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현금 IC카드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에 따른 재발급 요청을 접수한 경우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고,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재발급 한다.

제 10 조 현금 IC카드 출금비밀번호 오류 및 사용중지

- ① 이용자가 일자에 관계없이 현금 IC카드 출금비밀번호를 누적하여 3회 오류 입력시 또는 PIN을 누적하여 5회이상 오류 입력시에 은행은 현금 IC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된 경우 해제를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출금비밀번호, PIN을 변경 하여야 한다.
- ③ 자동화기기의 고장, 정전, 온라인 장애 및 사고발생시 당행 및 참가은행은 일시적으로 카드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온라인 마감, 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시 및 예금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 11 조 이용한도 및 이용시간

- ① 이용한도 및 이용시간은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
- ② 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및 가맹점 이용시간은 당행 및 참가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용시간은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

제 12 조 수수료

- ① 현금 IC카드의 신규발급 및 재발급시 이용자는 발급매수당 2,000 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카드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며 은행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자동화기기에 게시한다

제 13 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은행은 현금 IC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만기 정기에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현금 IC 카드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 3 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현금 IC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PIN 번호나 출금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이용자로부터 현금 IC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 3 자가 현금 IC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④ 신고된 비밀번호와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현금이 지급되거나 결제승인이 된 경우 카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당행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행이 예금주의 카드가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현금 IC 카드의 반환

이용자는 예금의 해지시에는 현금 IC 카드를 거래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현금 IC 카드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 16 조 카드의 이용제한

- ① 1 회 300 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범위 내에서 30 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최종거래일로부터 1 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자동화기기 1 일 인출한도는 70 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출한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각 예금종류별 약관 및 약정, 참가은행간 CD 공동이용업무규약, 금융 IC 카드공동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 조 관할법원

이 양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